



병무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련 병역법시행령 공포·시행 알림

1. 관련근거

- 가. 병역법 제58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장교등의 병적편입)
- 나.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)
- 다. 관보 제 19264호(2018. 5.28.)

2. 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 '18. 5.29.부로 「병역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, 주요 개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예정인 재학생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예정자들에게 안내·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군수련기관, 법학전문대학원 : 복수국적자 선발제외
- 나. 수의과대학교 :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변경, 복수국적자 선발제외

붙임 1. 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련 병역법시행령 개정사항. 끝.

병 무 청 장



수신자 24개 법학전문대학원 및 10개 수의과대학 (강원대, 건국대, 전남대, 전북대, 제주대, 충남대,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), 264개 군수련기관

주무관	이은하	행정사무관	한순영	과장	2018. 6. 12. 최규석
협조자					
시행	현역입영과-3825	(2018. 6. 12.)	접수		
우	35208	대전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	/ http://www.mma.go.kr		
전화번호	042-481-2737	팩스번호	042-481-2730	/ lyhsmall@korea.kr	/ 대국민 공개

공정하고 정의로운,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